|  |  |  |
| --- | --- | --- |
|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방법**  2011년 9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56호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개인공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공상업자의 건강한 발전을 권장, 지지, 유도하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관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개인공상업자 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능력이 있는 공민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법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개인공상업자의 개업, 변경과 말소등기는 <개인공상업자 조례>와 본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가 제출한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개인공상업자 등기기관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과 구를 설치한 시(지역) 공상행정관리국은 관할구역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현, 자치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시 관할 공상행정관리분국은 개인공상업자 등기기관(이하 등기기관이라 약함)으로서 본 구역 내의 개인공상업자 등기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조** 등기기관은 하급 공상행정관리소(이하 공상소라 약함)에 개인공상업자 등기업무를위임할 수 있다.  **제2장 등기사항**  **제6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  (2) 구성형태  (3) 경영범위  (4) 경영장소  개인공상업자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도 등기사항에 속한다.  **제7조** 경영자의 성명과 주소란 등기를 신청한 개인공상업자 공민의 이름 및 호적소재지의 상세한 주소를 말한다.  **제8조** 구성형태는 개인경영과 가족경영을 포함한다.  가족경영은 경영에 참가하는 가족 구성원의 성명을 등기비안 해야 한다.  **제9조** 경영범위란 개인공상업자가 진행하는 경영활동의 업종분류를 말한다.  등기기관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근거로 <국민경제 업종분류> 중의 분류표준을 참고하여 개인공상업자의 경영범위를 등기한다.  **제10조** 경영장소란 개인공상업자 경영소재지의 상세한 주소를 말한다.  개인공상업자가 등기기관에 등기하는 경영장소는 한개 장소에 국한된다.  **제11조** 개인공상업자가 명칭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공상업자 명칭등기 관리방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장 등기신청**  **제12조** 개인경영은 경영자 본인이 신청인이며 가족경영은 가족구성원 중 경영을 책임진 자가 신청인이다.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개업, 변경, 말소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 혹은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개인공상업자 등기신청은 신청인 혹은 그가 위탁한 대리인이 직접 경영장소 소재지 등기기관에 가서 진행한다. 등기기관이 개인공상업자 등기업무를 하부 공상소에 위임한 경우에는 경영장소 소재지의 공상소에서 등기한다.  신청인 혹은 그가 위탁한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경영장소 소재지 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혹은 그가 위탁한 대리인의 연락방식과 통신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료가 등기기관에 접수된 후 신청인은 접수통지서를 발급받은 일자부터 5일 내에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송부한 내용과 일치한 신청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개인공상업자가 개업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인한 개인공상업자 개업등기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명  (3) 경영장소 증명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서류.  **제15조** 개인공상업자가 변경등기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인한 개인공상업자 변경등기신청서  (2) 경영장소 변경 시에는 새로운 경영장소 증명 제출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서류.  **제16조** 개인공상업자가 말소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사인한 개인공상업자 말소등기신청서  (2)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 정본과 부본 전부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서류.  **제17조** 개업, 변경등기를 신청한 경영범위가 국가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결정이나 규정과 관련되어 사전허가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등기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국가 유관부서의 비준을 취득해야 하며, 동시에 등기기관에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접수, 심사와 결정**  **제18조**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면 접수한다.  신청자료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기관은 당장에서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전부내용을 알려주며, 신청인이 요구대로 전부 신청자료를 보정한 경우 등기기관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료 중에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현장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제19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당장에서 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이외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등기기관은 접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등기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접수거부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사항이 개인공상업자의 법적 등기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기기관은 지체 없이 접수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0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면 등기기관은 당장에서 등기를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등기허가통지서를 발급한다.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기관은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을 파견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자료 심사확인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5일 내에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1조** 우편, 팩스, 전자데이터교환, 메일 등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하여 등기기관에서 신청을 접수한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15일 내에 등기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2조** 등기기관은 등기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개인공상업자 등기허가통지서를 발급하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를 발급한다. 등기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기불허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3조** 개인공상업자는 매년 등기기관에서 영업집조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기기관은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 검사방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사항과 직전 연도의 경영상황을 검사한다.  **제24조** 개인공상업자 영업집조(이하 영업집조라 약함)는 정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개인공상업자 명칭, 경영자 성명, 구성형태, 경영장소, 경영범위와 등기번호, 영업집조 발급기관 및 발급일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제25조** 영업집조 정본은 개인공상업자 경영장소의 눈에 뜨이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제26조** 개인공상업자의 변경등기가 영업집조에 기재한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등기기관은 영업집조를 다시 발급한다.  **제27조** 영업집조를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개인공상업자는 등기기관에서 보충발급 받거나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집조를 분실한 경우 개인공상업자는 공개 발행하는 매체에 작폐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제28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기관 혹은 그 상부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혹은 그 직권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1) 등기기관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여 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적 직권을 넘어 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4) 신청자격이 없거나 법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의 등기를 허가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신청인이 기만, 뇌물제공 등 부당수단으로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취소한다.  본 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소한다면 공중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할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취소하여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제29조** 등기기관이 등기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 신청인에게 등기취소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0조** 유관 행정기관이 <개인공상업자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개인공상업자 행정허가가 취소, 말소되었거나 혹은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통지한 경우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하거나 혹은 당사자에게 명령하여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게 해야 한다.  **제31조** 등기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관리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여 정보화수단으로 개인공상업자에 대한 신용 감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 신용시스템의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제6장 등기관리정보의 공시 및 공개**  **제32조** 등기기관은 등기장소와 홈페이지에 개인공상업자의 아래의 등기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1) 등기사항  (2) 등기근거  (3) 등기조건  (4) 등기절차 및 기한  (5) 신청자료 목록 및 신청서양식  (6) 등기 요금기준 및 근거.  등기기관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공시내용에 대해 설명, 해석해야 한다.  **제33조** 공민이 개인공상업자의 아래와 같은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1) 개업, 변경, 말소 등기에 관한 정보  (2) 영업집조 검사에 관한 정보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제34조** 등기기관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개인공상업자의 등기관리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35조** 개인공상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기를 사취하거나 혹은 영업집조를 위조, 개찬,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4,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등록등기를 취소하거나 영업집조를 말소한다.  **제36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기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한다.  **제37조** 개인공상업자가 본 방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개인공상업자가 규정한 기한내에 연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한다.  **제8장 부 칙**  **제3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영구거주민 중의 중국공민, 대만지역 거주민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공상업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개인공상업자가 기업조직형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그에게 기존의 상호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공상등기보관서류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등의 시장주체 조직형태의 변경에 편리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법규와 정보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개인공상업자는 개업등기, 변경등기 수속을 밟을 때 등기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공상업자 등기 요금기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2조** 개인공상업자의 등기문서 양식과 영업집조의 정본, 부본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정한다.  **제43조** 본 방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9월 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반포하고 1998년 12월 3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86호로 개정한 <도농 개인공상업자 관리잠정조례 실시세칙>, 2004년 7월 23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13호로 반포한 <개인공상업자 등기절차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个体工商户登记管理办法**  2011年9月30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56号公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保护个体工商户合法权益，鼓励、支持和引导个体工商户健康发展，规范个体工商户登记管理行为，依据《个体工商户条例》，制定本办法。  **第二条** 有经营能力的公民经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领取个体工商户营业执照，依法开展经营活动。  **第三条** 个体工商户的开业、变更和注销登记应当依照《个体工商户条例》和本办法办理。  　　申请办理个体工商户登记，申请人应当对申请材料的真实性负责。  **第四条** 工商行政管理部门是个体工商户的登记管理机关。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主管全国的个体工商户登记管理工作。  　　省、自治区、直辖市工商行政管理局和设区的市（地区）工商行政管理局负责本辖区的个体工商户登记管理工作。  　　县、自治县、不设区的市工商行政管理局以及市辖区工商行政管理分局为个体工商户的登记机关（以下简称登记机关），负责本辖区内的个体工商户登记。  **第五条** 登记机关可以委托其下属工商行政管理所（以下简称工商所）办理个体工商户登记。    **第二章 登记事项**  **第六条** 个体工商户的登记事项包括：  　　（一）经营者姓名和住所；  　　（二）组成形式；  　　（三）经营范围；  　　（四）经营场所。  　　个体工商户使用名称的，名称作为登记事项。  **第七条** 经营者姓名和住所，是指申请登记为个体工商户的公民姓名及其户籍所在地的详细住址。  **第八条** 组成形式，包括个人经营和家庭经营。  　　家庭经营的，参加经营的家庭成员姓名应当同时备案。  **第九条** 经营范围，是指个体工商户开展经营活动所属的行业类别。  　　登记机关根据申请人申请，参照《国民经济行业分类》中的类别标准，登记个体工商户的经营范围。  **第十条** 经营场所，是指个体工商户营业所在地的详细地址。  　　个体工商户经登记机关登记的经营场所只能为一处。  **第十一条** 个体工商户申请使用名称的，应当按照《个体工商户名称登记管理办法》办理。    **第三章 登记申请**  **第十二条** 个人经营的，以经营者本人为申请人；家庭经营的，以家庭成员中主持经营者为申请人。  　　委托代理人申请开业、变更、注销登记的，应当提交申请人的委托书和代理人的身份证明或者资格证明。  **第十三条** 申请个体工商户登记，申请人或者其委托的代理人可以直接到经营场所所在地登记机关登记；登记机关委托其下属工商所办理个体工商户登记的，到经营场所所在地工商所登记。  　　申请人或者其委托的代理人可以通过邮寄、传真、电子数据交换、电子邮件等方式向经营场所所在地登记机关提交申请。通过传真、电子数据交换、电子邮件等方式提交申请的，应当提供申请人或者其代理人的联络方式及通讯地址。对登记机关予以受理的申请，申请人应当自收到受理通知书之日起5日内，提交与传真、电子数据交换、电子邮件内容一致的申请材料原件。  **第十四条** 申请个体工商户开业登记，应当提交下列文件：  　　（一）申请人签署的个体工商户开业登记申请书；  　　（二）申请人身份证明；  　　（三）经营场所证明；  　　（四）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定提交的其他文件。  **第十五条** 申请个体工商户变更登记，应当提交下列文件：  　　（一）申请人签署的个体工商户变更登记申请书；  　　（二）申请经营场所变更的，应当提交新经营场所证明；  　　（三）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定提交的其他文件。  **第十六条** 申请个体工商户注销登记，应当提交下列文件：  　　（一）申请人签署的个体工商户注销登记申请书；  　　（二）个体工商户营业执照正本及所有副本；  　　（三）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定提交的其他文件。  **第十七条** 申请开业、变更登记的经营范围涉及国家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在登记前须经批准的项目的，应当在申请登记前报经国家有关部门批准，并向登记机关提交相关批准文件。    **第四章 受理、审查和决定**  **第十八条** 登记机关收到申请人提交的登记申请后，对于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应当受理。  　　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法定形式，登记机关应当当场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申请人按照要求提交全部补正申请材料的，登记机关应当受理。  　　申请材料存在可以当场更正的错误的，登记机关应当允许申请人当场更正。  **第十九条** 登记机关受理登记申请，除当场予以登记的外，应当发给申请人受理通知书。  　　对于不符合受理条件的登记申请，登记机关不予受理，并发给申请人不予受理通知书。  　　申请事项依法不属于个体工商户登记范畴的，登记机关应当即时决定不予受理，并向申请人说明理由。  **第二十条** 申请人提交的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的，登记机关应当当场予以登记，并发给申请人准予登记通知书。  　　根据法定条件和程序，需要对申请材料的实质性内容进行核实的，登记机关应当指派两名以上工作人员进行核查，并填写申请材料核查情况报告书。登记机关应当自受理登记申请之日起15日内作出是否准予登记的决定。  **第二十一条** 对于以邮寄、传真、电子数据交换、电子邮件等方式提出申请并经登记机关受理的，登记机关应当自受理登记申请之日起15日内作出是否准予登记的决定。  **第二十二条** 登记机关作出准予登记决定的，应当发给申请人准予个体工商户登记通知书，并在10日内发给申请人个体工商户营业执照。不予登记的，应当发给申请人不予个体工商户登记通知书。    **第五章 监督管理**  **第二十三条** 个体工商户应当每年向登记机关申请办理年度验照，登记机关依照《个体工商户验照办法》，对个体工商户的登记事项和上一年度经营情况进行审验。  **第二十四条** 个体工商户营业执照（以下简称营业执照）分为正本和副本，载明个体工商户的名称、经营者姓名、组成形式、经营场所、经营范围和注册号、发照机关及发照时间信息，正、副本具有同等法律效力。  **第二十五条** 营业执照正本应当置于个体工商户经营场所的醒目位置。  **第二十六条** 个体工商户变更登记涉及营业执照载明事项的，登记机关应当换发营业执照。  **第二十七条** 营业执照遗失或毁损的，个体工商户应当向登记机关申请补领或者更换。  　　营业执照遗失的，个体工商户还应当在公开发行的报刊上声明作废。  **第二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登记机关或其上级机关根据利害关系人的请求或者依据职权，可以撤销个体工商户登记：  　　（一）登记机关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作出准予登记决定的；  　　（二）超越法定职权作出准予登记决定的；  　　（三）违反法定程序作出准予登记决定的；  　　（四）对不具备申请资格或者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准予登记的；  　　（五）依法可以撤销登记的其他情形。  　　申请人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个体工商户登记的，应当予以撤销。  　　依照前两款的规定撤销个体工商户登记，可能对公共利益造成重大损害的，不予撤销。  　　依照本条第一款的规定撤销个体工商户登记，经营者合法权益受到损害的，行政机关应当依法给予赔偿。  **第二十九条** 登记机关作出撤销登记决定的，应当发给原申请人撤销登记决定书。  **第三十条** 有关行政机关依照《个体工商户条例》第二十四条规定，通知登记机关个体工商户行政许可被撤销、吊销或者行政许可有效期届满的，登记机关应当依法撤销登记或者吊销营业执照，或者责令当事人依法办理变更登记。  **第三十一条** 登记机关应当依照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有关规定，依托个体工商户登记管理数据库，利用信息化手段，开展个体工商户信用监管，促进社会信用体系建设。    **第六章 登记管理信息公示、公开**  **第三十二条** 登记机关应当在登记场所及其网站公示个体工商户登记的以下内容：  　　（一）登记事项；  　　（二）登记依据；  　　（三）登记条件；  　　（四）登记程序及期限；  　　（五）提交申请材料目录及申请书示范文本；  　　（六）登记收费标准及依据。  　　登记机关应申请人的要求应当就公示内容予以说明、解释。  **第三十三条** 公众查阅个体工商户的下列信息，登记机关应当提供：  　　（一）开业、变更、注销登记的相关信息；  　　（二）验照的相关信息。  　　（三）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规定公开的其他信息。  **第三十四条** 个体工商户登记管理材料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登记机关不得对外公开。    **第七章 法律责任**  **第三十五条** 个体工商户提交虚假材料骗取注册登记，或者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营业执照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处4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注册登记或者吊销营业执照。  **第三十六条** 个体工商户登记事项变更，未办理变更登记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处15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三十七条** 个体工商户违反本办法第二十五条规定的，由登记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500元以下的罚款。  **第三十八条** 个体工商户未在规定期限内办理年度验照的，由登记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吊销营业执照。    **第八章 附 则**  **第三十九条**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永久性居民中的中国公民，台湾地区居民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登记为个体工商户。  **第四十条** 个体工商户申请转变为企业组织形式的，登记机关应当依法为其提供继续使用原名称字号、保持工商登记档案延续性等市场主体组织形式转变方面的便利，及相关政策、法规和信息咨询服务。  **第四十一条** 个体工商户办理开业登记、变更登记，应当缴纳登记费。  　　个体工商户登记收费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四十二条** 个体工商户的登记文书格式以及营业执照的正本、副本样式，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制定。  **第四十三条** 本办法自2011年11月1日起施行。1987年9月5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发布、1998年12月3日国家工商行政管理局令第86号修订的《城乡个体工商户管理暂行条例实施细则》、2004年7月23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13号发布的《个体工商户登记程序规定》，同时废止。 |